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고성미 의원 대표발의]

의안번호	2193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2. 7. 11.

발 의 자 : 고영찬, 정순기, 장규권

정재동, 엄샛별, 고성미 의원

## 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“소통담당관”을 신설(안 제3조제2항제2호)
- 나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“기획재정국”을 “기획경제국”으로 “행정문화국”을 “행정안전국”으로 변경 (안 제3조제2항제2호)
- 다.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“도시안전국”을 “푸른미래도시국”으로 “경제환경국”을 “문화환경국”으로 변경 (안 제3조제2항제3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71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일부개정 조례안 : 별도 첨부
  - 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도 첨부
  - 3) 입법예고 : 2022. 7. 14. ~ 7. 18.
  - 4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기획재정국”을 “기획경제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중 “행정문화국”을 “행정안전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“도시안전국”을 “푸른미래도시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바목 중 “경제환경국”을 “문화환경국”으로 한다.

나. 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(생략)</p> <p>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행정재경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행정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~ 사. (생략)</p> <p>3. 복지건설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도시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·마. 삭제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경제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기획경제국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행정안전국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푸른미래도시국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문화환경국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현행 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3. 6., 2014. 12. 30., 2022. 1. 12.>

**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정수)**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상임위원회를 두며,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12. 30.>

1. 의회운영위원회 : 6명 이내 <개정 2014. 12. 30.>
2. 행정재경위원회 : 5명 이내 <개정 2008. 3. 6., 2014. 12. 30.>
3. 복지건설위원회 : 5명 이내 <개정 2008. 3. 6., 2012. 7. 17., 2014. 12. 30.>

**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**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 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 - 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
  - 다.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  - 라.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의 이의신청과 제12조의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항 <신설 2022. 1. 12.>
2. 행정재경위원회 <개정 2008. 3. 6.>
  - 가.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 1. 16.>
  - 나. 삭제 <2014. 12. 30.>
  - 다.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<개정 2010. 10. 11., 2013. 1. 18., 2019. 12. 31.>
  - 라. 행정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<개정 2008. 3. 6., 2010. 10. 11., 2013. 1. 18., 2019. 1. 16.>
  - 마.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<개정 2013. 1. 18.>
  - 바.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<개정 2013. 1. 18.>
  - 사.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<신설 2019. 1. 16.>
3. 복지건설위원회 <개정 2008. 3. 6., 2018. 1. 15.>

가. 복지가족국 소관에 관한 사항 <개정 2008. 3. 6., 2010. 10. 11., 2019. 1. 16., 2019. 12. 31.>

나. 도시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<개정 2010. 10. 11., 2019. 12. 31.>

다. 교통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<개정 2010. 10. 11., 2013. 10. 31., 2019. 12. 31.>

라. 삭제 <2019. 1. 16.>

마. 삭제 <2019. 12. 31.>

바. 경제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. 1. 17.>

③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(이하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**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** ①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**제5조(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)** ①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상임위원의 선임 후 상임위원의 개선 또는 보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**제6조(상임위원의 임기)**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다만,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②보임되었거나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**제7조(상임위원장)**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을 둔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②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
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**제8조(특별위원회)**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. 12.>

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, 위원구성, 활동기간, 활동내용,

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, 활동기간,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22. 1. 12.>

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22. 1. 12., 2022. 1. 12.>

④예산안, 결산, 예비비 지출,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. <신설 2022. 1. 12.>

⑤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 <신설 2022. 1. 12.>

⑥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 <신설 2022. 1. 12.>

⑦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22. 1. 12.>

[중전 제4항에서 이동]

**제9조(특별위원회의 위원)**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**제10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**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**제11조(위원장의 임무)**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.

**제12조(부위원장)**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**제13조(전문위원)**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둔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②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**제14조(준용규정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,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